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2. 12. 29(목) 10:40

제24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(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286호

나. 제 출 자 : 고영찬 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2. 12. 21.

라. 회부일자 : 2022. 12. 21.

2. 제안이유

기업 운영에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로 이에스지(ESG) 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, 이에스지(ESG) 경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마련 및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
- 다.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 지원(안 제7조)
- 마.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(안 제10조)

4. 관계법령

- 가. 「산업발전법」제18조 및 제19조
- 나.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제4조
- 다.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3조
- 라.「지방자치법」제13조

5. 검토의견

Ⅱ 제정배경

- ESG1) 경영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(E), 사회(S) 및 지배 구조(G) 부분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의미, 즉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임.
-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탄소중립과 같은 주요 현안들이 발생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ESG경영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.
 -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만들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ESG가 기업 경영의 최대 화두로 떠오름
 - 글로벌 탄소중립 선언,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및 EU의 탄소 국경조정세 도입 논의 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EGG 경영의 중요성이 현실화 되고 있음
- 이러한 ESG 관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극대화에 기여 할 것이라 예상되지만, 정책 등에 따른 급격한 경영체제 변화에 따라 리스크 발생 우려도 상존하고 있음

¹⁾ E(환경 environment), S(사회 social), G(지배구조 governance)

○ 따라서, ESG 경영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에 따른 리스크 해소를 위해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절실함.

2 종합의견

- ESG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정부정책방향과 국민인식 등을 볼 때 ESG 경영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만한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지며,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점차 ESG 경영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.
- ESG 경영을 통해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을 통한 매출증대, 기업 인식변화에 따른 인재 유입, 탄소 중립 등에 따른 비용절감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유지·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예상됨.
- 그러나, 다수의 기업들이 ESG 등급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아니라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부족한 상황으로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.
- 따라서, 구 차원에서 관내기업에 대한 ESG 경영 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1. 관계법령 1부.

2.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1부. 끝.

산업발전법

[시행 2022. 6. 10.] [법률 제18888호, 2022. 6. 10., 일부개정]

- 제18조(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산 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 ·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발전시책에 반영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- 제19조(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)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. 환경적 건전성,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(이하 "지속가 능경영"이라 한다)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2.>
 -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2.>
 - 1.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
 - 2.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
 - 3.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
 - 4.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
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 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
- ④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2.>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2. 12.>
-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2. 12.>
-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가 제9항에 따른 지원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2. 12., 2022. 6. 10.>
-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 6. 10.>
- ⑨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·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7. 12. 12., 2022. 6. 10.>

지속가능발전 기본법

[시행 2022. 7. 5.] [법률 제18708호, 2022. 1. 4., 제정]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·사회·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, 포용적 사회 구현, 생 태·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 하여야 한다.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,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·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,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.

중소기업기본법

[시행 2022. 11. 15.] [법률 제19044호, 2022. 11. 15., 타법개정]

- 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7. 25.>
 -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7. 25.>

[제목개정 2011. 7. 25.]

불임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

연번	조 례 명	공포일	소 관 부 서
1	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	2021.07.23.	경 제 창 업 실 창 업 진 흥 과
2	충청남도 중소기업·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	2021.12.30.	경 제 실 소 상 공 기 업 과
3	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	2021.12.31.	경 제 통 상 국 경 제 기 업 과
4	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	2022.03.03.	일 자 리 경 제 실 중소벤처기업과
5	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	2022.07.15.	경제투자유치국 중소벤처기업과
6	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	2022.07.19.	경제실 경제기획 관 특화기업지원과
7	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	2022.11.04.	뉴 디 자 인 국 뉴 디 자 인 과
8	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	2022.12.08.	기 획 재 정 국 기 획 예 산 과
9	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	2022.11.11.	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지원 단